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18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 한국의 FTA 10년 성과 ① —

2014년 3월

명진호 수석연구원

정혜선 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

문슬기 연구조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1
1. 추진 동향	1
2. 추진 전략	12
3. 추진 절차	15
4. 업계·정부 간 의사소통	17
5. FTA 활용	20
6. 국내보완대책	23
II. 결론 및 향후 과제	27
1. 결론	27
2. 향후 과제	30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명진호 수석연구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정혜선 연구원(☎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제현정 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I.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1. 추진 동향

(1) FTA 추진 전개

□ 2004년 4월 사상 첫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이처럼 FTA를 확대하는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FTA 1.0: FTA 추진 결정과 한·칠레 FTA 발효('98~'04년)

- 다자주의 속에서 수출 확대에 주력한 우리나라는 FTA 확대라는 세계 조류 속에서 상대적 불리함에 처했고 이를 극복할 필요성 발생
- 동시에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FTA를 통해 수출 시장 확보, 투자 유치, 제도 선진화,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도모
- '98년 외교부 내 통상교섭본부 설치 및 한·칠레 FTA 추진을 결정, '99년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인 '02.12월에 협상 타결, '04.4월 발효

○ FTA 2.0: FTA 로드맵 작성과 한·EU 및 한·미 FTA 발효('04~'12년)

- FTA 추진 본격화를 위해 한·칠레 FTA 타결 이듬해인 '03.8월 협상 대상과 추진 전략을 담은 「FTA 로드맵」을 작성, '04.5월 수정·보완
-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미국·EU·중국 등 거대·선진 경제권을 목표로 경제 효과를 높이고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FTA 후발 주자로서 캐치업 위한 동시다발적인 협상 추진 전략을 담음
- '11.7월 한·EU FTA, '12.3월 한·미 FTA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 FTA를 성공리에 발효하며, FTA 변방에서 중심 국가로 올라서게 됨

○ FTA 3.0: 新통상로드맵 작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12년~)

- 새정부 출범후 메가 FTA, 신흥국 부상, 보호 무역 확대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新통상로드맵」 발표('13.6월)
- 新통상로드맵은 한·미 FTA, 한·중 FTA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연결고리(linchpin)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축 역할을 강조
- 또한 신흥국의 발전 동력을 해외 진출의 계기로 삼고자 신흥국의 개발·협력수요에 부응키 위해 산업, 자원 협력 등과 연계하는 상생형(win-win) FTA 추진 전략도 담고 있음

〈FTA 추진 전개 과정〉

FTA 1.0('98~'04년) FTA 결정, 한·칠레 FTA 발효	⇒	FTA 2.0('04~'12년) FTA 로드맵, 한·미, 한·EU FTA 발효	⇒	FTA 3.0('12년~) 新통상 로드맵, 동아시아경제통합 대응
· '98. 통상교섭본부 설치 · '98. FTA 추진 결정 · '98. 첫 상대로 칠레 선정 · '99~'02. 약 3년의 장기간 협상 끝에 타결 · 비준 과정의 갈등 발생 · '04.4 한·칠레 FTA 발효		· '03.8 로드맵 작성 · '04.5 로드맵 수정·보완 · 美·EU·中 거대·선진 경제권 중장기 목표 ·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 ·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 '11.7 한·EU FTA 발효 · '12.3 한·미 FTA 발효		· '12.5 한·중 FTA 협상 개시 · '13.3 한·중·일 FTA, '13.5 RCEP 협상개시 · '13.6 新통상 로드맵 발표 ·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축(linchpin) 역할 · 신흥국과 상생형 FTA 추진 · '13.11 TPP 관심 표명

① FTA 1.0: FTA 추진 결정과 한·칠레 FTA 발효('98~'04년)

- WTO 체제하에서 수출 확대에 주력하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FTA 확대라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 불리함에 처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했음
- '95년 WTO 출범 이후 역설적으로 FTA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등만이 FTA를 추진하지 않으며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

- 내부적으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했고, FTA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경제제도의 선진화,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의 필요성이 대두
- 이에 우리정부는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98.3월) 첫 번째 FTA 상대로서 칠레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과 관련된 국내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 '98.11월 국무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안건 1호로 한·칠레 FTA 추진을 의결함에 따라, 첫 번째 FTA 상대로 칠레가 선정됨
 - 칠레를 첫 FTA 상대로 선택한 이유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 거리가 멀고 계절이 반대로 작물의 재배시기가 다른 만큼 농업의 영향이 제한적인 점, FTA 경험이 많은 칠레로부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함
- '04.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첫 번째 FTA인 만큼 협상과정 및 비준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농업계와 정치계의 반발이 심함. 이러한 경험은 이후 FTA 추진과 대책 마련의 밑바탕이 됨
 - 한·칠레 FTA는 1차 협상('99.12월)이 개시된 이후 '00.12월까지 4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지만 양허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약 1년 8개월간 협상이 중단되었고, '02.8월 협상 재개 이후 별도의 상품 양허 협상을 거쳐 '02.10월 협상 개시 후 약 3년 만에 협상을 타결

- 협상 과정 및 타결 전후로 찬반 논란이 확산되어 한·칠레 FTA는 '03.7월 국회 상정 이후 4차례의 상정 끝에 '04.2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내의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체계적인 추진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② FTA 2.0: FTA 로드맵 작성과 한·EU 및 한·미 FTA 발효('04~'12년)

- 한·칠레 FTA 타결 이후 FTA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03.8월 FTA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DDA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04.5월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게 되었으며, 동 로드맵은 FTA 추진 대상과 전략을 담고 있음
-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 FTA 추진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 우선 협상 개시가 가능한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EFTA 등 그 주변국과 FTA를 추진하여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함
- 또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추진을 지향하고 있으며, FTA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순차적인 추진보다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전략을 세우게 됨
-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게 '11.7월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이듬해인 '12.3월 한·미 FTA도 발효됨
- 한·EU FTA는 '07.5월 협상이 개시되어 8차례 협상이 개최되었고 EU측의 관세환급제도 금지 요구가 최대 쟁점이었지만, FTA 발효 5년 이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되어 '09.7월 협상이 타결되었고 '11.7월 발효됨

- 한·미 FTA는 '06.6월 협상개시, '07.4월 타결되었지만 '08년 금융위기의 여파와 국내 농업계 및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 등이 맞물려 발효가 장기간 지연되었고, '10.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되고 많은 갈등속에서도 양국 정부, 경제계, 정치권의 노력으로 '12.3월 발효
 - 추가협상은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와 한국의 일부 농수산물 및 의약품 관련 요구를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균형이 맞추어짐
-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칠레 FTA의 경험 속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04.6월 FTA 체결절차규정이 마련되었고, 한·미 FTA를 거치며 '11.12월에는 감독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통상절차법이 마련됨
 -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FTA 체결절차규정은 FTA 추진 절차를 체계화하고 민간자문회의와 공청회 실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임
 - '11.12월 통과되어 '12.7월부터 시행된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FTA 등 통상 협정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의 의무화 등 국회 권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함
- FTA 추진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산업을 위한 국내보완대책도 한·EU 및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점차 확대
 - 한·칠레 FTA 당시 농업에 한정되어 있던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이후 농수산업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마련됨
 - '07.11월 마련된 국내보완대책은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 전후를 거쳐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고, 대책 내용은 직접적인 피해 보전과 함께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③ FTA 3.0: 新통상로드맵 작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12년~)

- 한·중·일 FTA, RCEP, TPP, 일·EU FTA, 미·EU간 TTIP 등 메가 FTA 추진과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新통상 로드맵('13.6월)」을 마련
 -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
 - '12.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13.3월 한·중·일 FTA 협상 개시, '13.5월 RCEP 협상 개시에 이어 '13.11월에는 TPP 협상 참여에도 관심표명
 - 기존의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가운데 신흥국과는 신흥국의 개발 및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상생형(win-win) FTA를 추진하는 방향
 - '13.5월 한·터키 FTA 발효, '14.2월 한·호주 FTA 가서명, '14.3월 한·캐나다 FTA 타결 등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동시에 신흥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해 이미 FTA가 발효된 ASEAN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양자 FTA 추진
- 新통상 로드맵은 또한 통상부처 이관에 맞추어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13.5월 「통상산업포럼」을 발족하고, 22개 분과회의를 통해 FTA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협의회도 마련하여 비관세 장벽을 수집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 FTA 국내보완대책은 우려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특히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90%→100%)을 상향하는 등 농어민 피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

(2) FTA 추진 성과

-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현재 9건 46개국¹⁾으로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주요 경제권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룬 바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FTA를 발효하며 '04년 이후 10년 만에 FTA 네트워크를 큰 폭으로 확대함
 - 특히, ASEAN, EU, 미국 등 주요 신흥 경제권과 거대·선진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²⁾
 - 또한 콜롬비아와의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고 최근 캐나다, 호주와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되고 있어 FTA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성장은 지속될 전망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효 (9건, 46개국 - 크로아티아 추가시 47개국)	칠레	'04.4. 발효
	싱가포르	'06.3. 발효
	EFTA ³⁾	'06.9. 발효
	ASEAN ⁴⁾	상품 : '07.6.1 발효 서비스 : '09.5.1 발효 투자 : '09.9.1 발효(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행중) - 한-ASEAN FTA 업그레이드 추진('13.5. 국내 공청회 개최)
	인도 CEPA	'10.1.1 발효 - '14.1.17 정상회담시 CEPA 개선 합의
	EU (28)	'11.7.1 잠정발효 '13.7.1 크로아티아의 EU 신규가입(크로아티아 포함시 발효국 47개국) - 한국의 對크로아티아 수출 FTA 적용 '13.11.8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추가 위한 수정 협정문 가서명
	페루	'11.8.1 발효
	미국	'12.3.15 FTA 발효
	터키	'13.5.1 발효, '13.11. 서비스·투자 5차 협상

1) '13.7월 EU의 회원국 확대에 크로아티아를 포함할 경우 47개국까지 확대

2) 현재 미국, EU와 FTA를 발효한 나라는 이스라엘, 멕시코, 요르단, 칠레, 한국, 페루, 콜롬비아,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으로 주요 제조업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4개국

서명·타결 (3건, 3개국)	콜롬비아	'12.6.25 협상 타결, '12.8.31 협정문 가서명, '13.2.21 정식서명, '13.8.21 우리 국회 소관위접수, '13.11.12 콜롬비아 상원 관련 법안 통과
	호주	'09.5. 개시, '10.5.24 제5차 협상 개최 이후 중단 '13.11.15 협상 재개 및 제6차 협상, '13.12.3 제7차 협상, '13.12.4 실질적 타결 선언, '14.2.10 가서명 - '14년 상반기내 정식서명 추진
	캐나다	'05.7. 협상개시, '08.3.25 제13차 협상 이후 중단, '12.7.6 현황점검회의, '13.1.21 비공식 회의, '13.11.25 협상 재개 및 제14차 협상, '14.1. 제15차 협상, '14.3.11 양국 정상간 협상 타결 선언
협상중 (6건, 15개국)	중국	'12.5.14 한·중 FTA 제1차 협상, '13.9. 제7차 협상, 1단계 협상(modality) 타결 '13.11. 제8차 협상, 제2단계 협상 개시, '14.3. 제10차 협상
	한·중·일	'13.3.26 제1차 협상 개최, '13.7. 제2차 협상, '14.3. 제4차 협상
	RCEP ⁵⁾	'13.5.9 제1차 협상, '13.9. 제2차 협상, '14.1. 제3차 협상,
	인도네시아 CEPA	'12.7.12 CEPA 제1차 협상, '14.2. 제7차 협상
	베트남	'12.4.20 국내 공청회 개최, '12.9.3 제1차 협상, '12.12.FTA협상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담, '13.10 제3차 협상
협상재개 여건조성	뉴질랜드	'09.6.8 협상 개시, '10.5.12 제4차 협상 이후 중단, '13.12.3 FTA 협상 재개 합의, '14.2.17 제5차 협상 개최
	일본	'03.12. 협상개시, '04.11. 제6차 협상 후 중단, '10.9.16 제1차 국장급 협의 개최, '12.4.1차 과장급 실무협의, '12.5.2차 과장급 실무협의, 12.6.3차 과장급 실무협의
	멕시코	'06.2. 협상개시, 협상 교착 '07.12.협상재개, '08.6.제2차 협상-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전자상거래 협정문 최종 타결)
검토 및 공동연구	GCC ⁶⁾	'08.7. 협상개시, '09.7.8 제3차 협상 개최 이후 중단
	TPP ⁷⁾	'13.11.15 참가 검토를 위해 국내 공청회 개최 예정, '13.11.29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 관심 표명 '13.12.3 WTO 각료회의 계기 예비 양자 협의 개시 '14.1.~ 예비 양자협의 추진 - 미국(1.13), 멕시코(1.15), 칠레(1.17), 페루(1.21), 말레이시아(1.21), 싱가포르(1.23), 캐나다(2.7), 호주(2.11), 브루나이(2.13), 뉴질랜드(2.14), 베트남(2.16), 일본(3.6)
	말레이시아	'11.5. FTA 타당성 연구 개시, '12.12. 타당성 연구 완료
	중미지역 ⁸⁾	'11.4. 공동연구 종료, '12.10.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개최
	태국	'13.11. 제1차 공동연구 개최
	MERCOSUR ⁹⁾	'07.10. 공동연구 최종연구보고서 채택, '09.7.23 한·MERCOSUR TA(Trade Agreement) 추진 협의 MOU 체결
	이스라엘	'09.8.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 공동연구 종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10개국
- 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 6)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6개국
- 7)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12개국
- 8)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9)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

□ FTA 확대에 따라 FTA 교역 비중과 경제영토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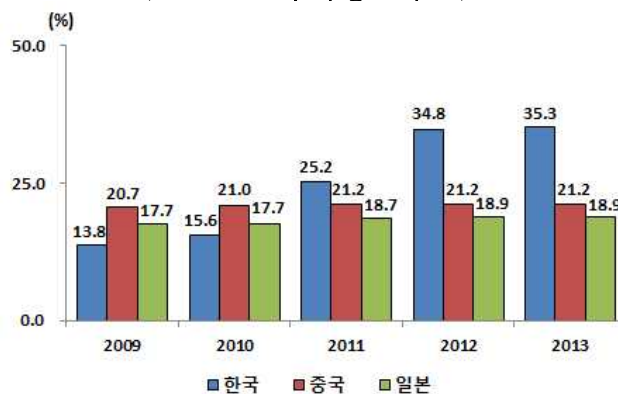
○ 적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09년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13.8%에 머물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뒤처졌으나, 한·EU 및 한·미 FTA 발효에 힘입어 '13년말 현재 35.3%까지 확대되며 경쟁국 보다 유리한 교역 환경을 조성

- FTA 교역비중은 '09년 우리나라 13.8%, 중국 20.7%, 일본 17.7% 였으나 '13년말 현재는 우리나라 35.3%, 중국 21.2%, 일본 18.9%

○ 우리나라의 FTA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단기간에는 경쟁국과의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미 협상이 타결된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의 교역비중은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를 포함하여 39.5%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중국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포함시 21.9%이며, 일본은 최근 타결된 FTA가 없는 상황

〈FTA 교역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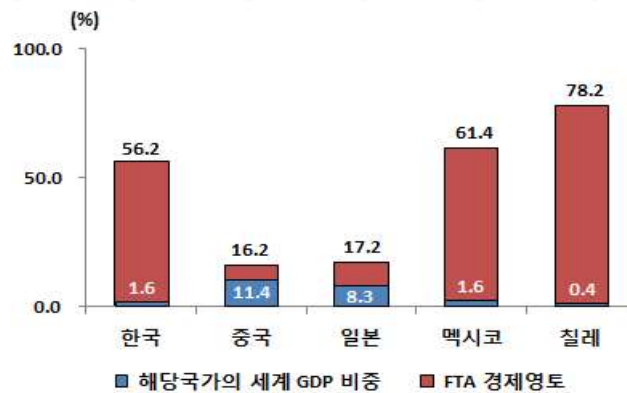


자료: IMF DOTS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 우리나라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치고 있지만 FTA로 확보한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56.2%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보다 자유롭게 공략할 수 있게 되었음

- 우리나라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중국(11.4%), 일본(8.3%)에 비해 매우 작지만, FTA로 확보한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56.2%에 달해 중국 16.2%, 일본 17.2%를 큰 폭으로 앞지르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경제영토는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칠레(78.2%), 멕시코(61.4%)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협상이 타결된 호주·캐나다·콜롬비아를 포함하면 61.4%까지 확대되고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72.8%까지 확대될 전망

〈FTA 경제영토 비교〉



주: '13년말 FTA 발효 기준, 현재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의 FTA 발효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IMF WEO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2. 추진 전략

□ 우리 정부는 한·칠레 FTA 타결 이후 작성한 「FTA 로드맵」과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통해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

- '03.8월 작성되어 '04.5월 수정·보완된 「FTA 로드맵」은 FTA 후발 주자로서 캐치업 전략과 FTA 추진의 중장기 목표를 담고 있음
- 약 10년 뒤인 '13.6월 새롭게 작성된 「新통상 로드맵」은 다자간 FTA 추진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FTA 추진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이러한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목표)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목표 상대는 미국, EU, 중국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거대·선진 경제권으로, 우선적으로 그 주변국과 FTA를 추진하여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의 교두보로 삼음
 -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04.1월 협상개시)→한·ASEAN FTA('05.2월), 한·EFTA FTA('05.1월)→한·EU FTA('07.5월), 한·캐나다('05.7월) 및 한·멕시코('06.2월) FTA→한·미 FTA('06.6월)로 이어지는 등 주변국과 협상 개시가 향후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으로 이어짐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우리나라는 FTA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상품 개방을 추진하고 서비스, 투자, 지적권, 정부조달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FTA를 추진

- 한·미 FTA의 경우 5년내 미국측 관세 철폐 수준이 94.9%(품목수 기준), 한·EU FTA의 경우 5년내 EU측 관세 철폐 수준이 99.6%에 달하는 등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이룩하는 등 상대국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
-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은 FTA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중
- (동시다발적 FTA 추진) FTA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선발국을 추격하고 경쟁국에 앞서기 위해 여러 개의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각 FTA별 협상 개시 연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http://www.fta.go.kr>) 사이트 협정별 일지를 바탕으로 작성

- 新통상 로드맵에서 나타난 FTA 전략은 메가 FTA 추진 확대, 신흥국의 부상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대응, 신흥국과의 FTA 추진 방안 등을 담고 있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강조
- 새정부 출범을 전후로 TPP('10.3월 협상개시, '12.3월 일본 참가), RCEP('13.5월 협상개시), 日·EU FTA('13.4월 협상개시), 美·EU 간 TTIP('13.7월 협상개시)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 및 선진국간 FTA 등 거대 규모의 메가 FTA 추진이 활발

- 新통상 로드맵은 이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발효된 한·미 FTA와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 RCEP의 연결고리(linchpin)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 우리나라는 '13.11월 TPP 협상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TPP 참여 12개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중

〈아태 지역 경제통합과 우리의 역할〉



자료: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3.6.14일

- 또한 신흥국의 시장 개방이 어려운 만큼 신흥국의 개발, 협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상생형(win-win) FTA를 추진할 방침
- 개방 수준이 높지 않았던 한·ASEAN FTA의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 진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양자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산업 협력의 내실화 등을 도모

〈FTA 로드맵 주요 내용 비교〉

	FTA 추진 로드맵('04.5월)	新통상 로드맵('13.6월)
대외 통상환경	양자간 FTA 확산	다자간 FTA 확산
추진 전략 및 내용	FTA 교섭 중심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추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지향	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대내적 소통 강화
통상 교섭의 지향점	FTA Hub 구축	지역통합의 핵심축(linchpin)
추진 방식	정부주도 + 민간자문	민관 협업 체계 구축 통상교섭-이행-대책 일원화

자료: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3.6.14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추진 절차

- FTA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며 추진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FTA체결절차규정」이 마련되었고 통상 조약 전반을 아우르는 「통상절차법」으로 확대되어 의견 수렴 및 국회의 권한이 강화됐음
 - 한·칠레 FTA 발효 직후인 '04.6월 대통령훈령으로 FTA 체결절차규정이 제정되어 FTA 추진 과정이 체계화되었고 민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
 - FTA 체결절차규정은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FTA실무추진위원회 → FTA 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체계화 함
 - 또한 FTA 추진위원회 산하에 FTA 민간자문회의를 두어 민간의 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협상 개시 전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토록하고 있음
 - 한·미 FTA의 비준 절차를 거친 이후인 '11.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2.7월부터 시행된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FTA에서 통상조약 전반으로 확대하고 의견 수렴 절차 및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 통상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통상조약은 WTO 등 국제기구 가입, RTA, FTA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 대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을 포함
 - 또한 국민의 의견 제출이 가능토록 하고, FTA 등 협상 추진 전에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수립·보고, 공청회 개최, 국민의 의견제출,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이행
 - 협상 중에는 중요사항 보고 및 국회 의견 제시를, 협상 후에는 협상 결과의 보고 의무를 부과해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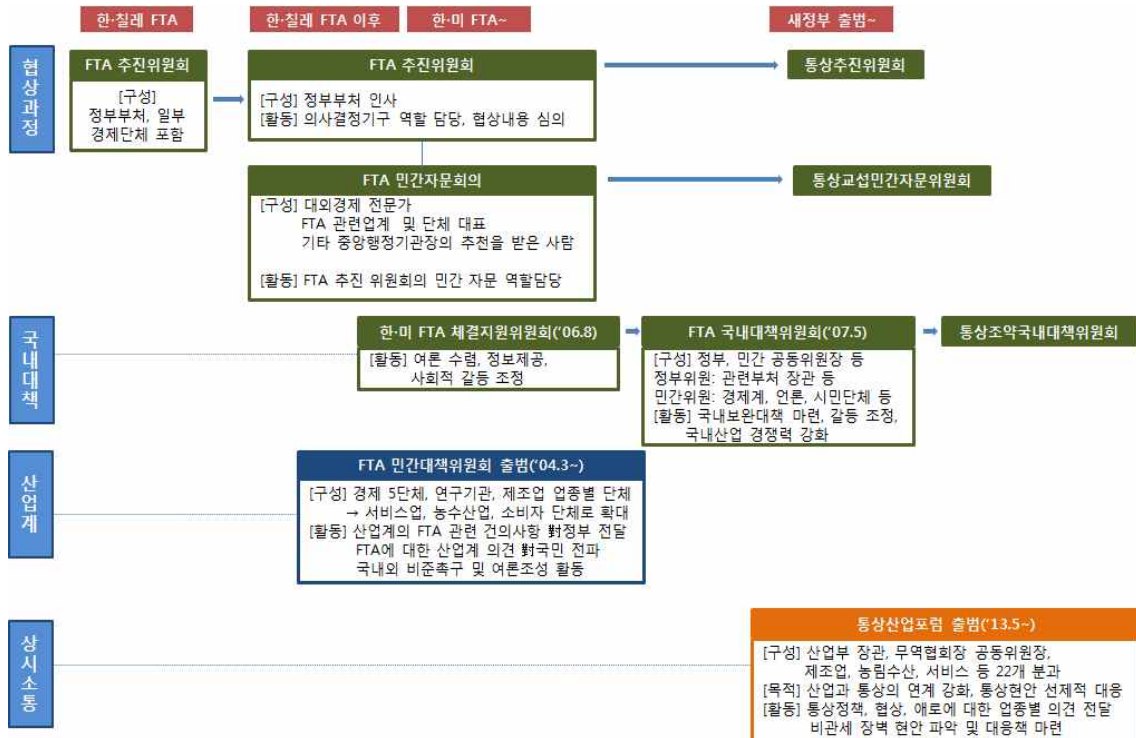
- 이행상황은 FTA별로 발효후 5년마다(총 2회) 경제효과, 국내대책의 실효성·개선안, 상대국의 의무 이행 등을 평가해 국회보고
- 실제로 주요 FTA인 한·중 FTA의 경우 통상절차법 시행('12.7월) 이전인 '12.5월 FTA 협상이 개시되었지만 중요성이 고려되어 통상절차법을 준용, 한·중 FTA 추진계획('12.4월)이 국회 소관위에 보고되었고, 한·중·일 FTA와 RCEP도 추진계획이 국회에 보고됨('12.11월)
- 동 체결계획에는 해당 FTA의 체결 목표, 주요 내용, 추진 일정, 기대효과, 주요 쟁점, 대응 방향, 주요국 동향 등이 포함됨

4. 업계·정부 간 의사소통

□ FTA 추진 과정에서의 업계와 정부간 의사소통은 ①정부 주도 의견 수렴 → ②민간 자문의 제도화 및 산업계의 자발적 활동 → ③민관 합동 기구의 출범을 통한 ‘상시 소통’의 관계로 진화

- 한·칠레 FTA 추진 당시에는 FTA 추진위원회에 일부 경제단체 대표만이 참여하여 정부와 업계 간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업계·정부간 의사소통은 한·칠레 FTA 타결 이후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화되었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FTA 민간자문회의,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FTA 민간대책위원회, 국내 대책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FTA국내대책위원회가 활동
 - 한·칠레 FTA 이후 마련된 FTA 체결절차규정을 통해 FTA 추진위원회 산하에 30인 규모의 민간 전문가 및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FTA 민간자문회의가 설치되며 업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이와 별도로 '04.6월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정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 FTA 비준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이해를 전파
 - 사회적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하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07.5월 상설기구인 FTA 국내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고, 동 위원회에는 정부측에서 관련 부처 장관 등이, 민간측에서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
- 최근 새정부 들어서는 산업과 통상의 연계가 강화되며 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이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FTA뿐만 아니라 각종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시 소통 단계에 들어섬

〈업계·정부간 의사소통 구조의 변화〉



자료: 정부, 유관기관 자료 및 언론 자료 종합하여 정리

□ 특히, 산업계가 구성한 민간대책위원회는 한·미 FTA를 기점으로 제조업은 물론, 농수산업, 서비스업, 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FTA 비준 과정에서 적극적인 비준 촉구 활동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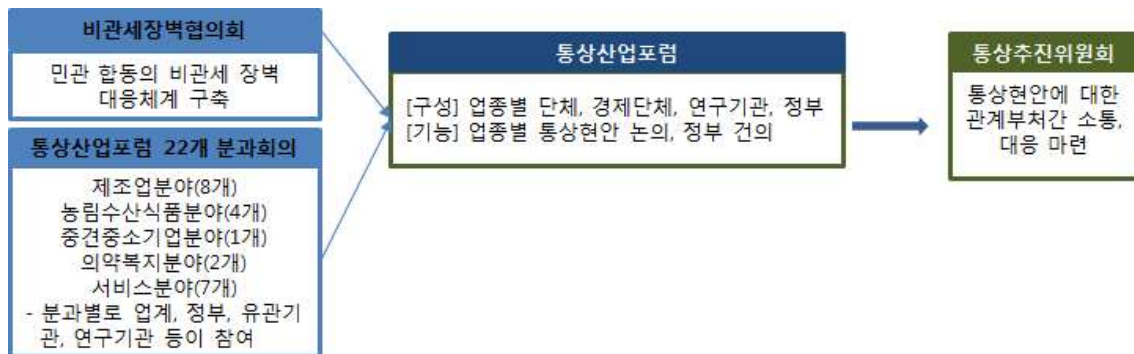
- FTA 민간대책위원회¹⁰⁾에는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업, 농수산업, 소비자 단체를 포괄하며 업종별 의견 개진 및 산업간 이해 확대에 기여했고 정부 협상단에 업계의 관심과 고려사항을 전달
- 또한 한·미, 한·EU FTA 협상 타결 이후에는 산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회를 상대로 비준 촉구 활동을 펼침
- 더불어 FTA 상대국 현지에서 EU 의회 의원과 미국 의원의 설득을 위한 지역구 여론 설득 활동(FTA outreach)을 전개하는 등 FTA 비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10) 민간대책위원회에는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 등의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기관이 참여

□ 새정부 출범과 함께 '13.5월 발족한 통상산업포럼은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며 업계와 정부의 상시 소통채널 역할 수행

-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장관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산하에 22개 분과를 구성
 - 발족 10개월간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가 52회 개최되어 한·중 FTA, TPP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전달이 이루어짐
- 통상산업포럼은 FTA 관련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제반 통상현안에 대한 대책마련 작업도 병행하여 업계의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는 등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13.9월 통상산업포럼 내에 비관세장벽협의회를 마련하여 실질적 통상애로 해소를 추진하는 등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

〈통상산업포럼의 통상현안 대응 체계〉



자료: 정부, 통상산업포럼, 언론 자료 종합하여 정리

5. FTA 활용

□ 발효 초기 낮은 FTA 활용률이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업계의 노력과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책을 통해 FTA 활용률은 지속해서 증가

○ 낮은 개방수준과 불합리한 통관 행정 등의 이유로 한·ASEAN과 한·인도의 활용률이 여전히 낮지만 여타 FTA는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 전체적으로 '13년 활용률은 수출 66.9%, 수입 69.0%를 기록

- 한·EU FTA 등의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 기업수도 '11년 4,012개 → '12년 5,264개 → '13.7월 5,986개로 확대 추세

【우리나라의 FTA별 활용률(%)】

	FTA명	발효 1년	발효 2년	발효 3년	발효 4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수출	한·칠레 FTA	93.1	95.8	96.7	98.7	97.0	-	75.2	78.8
	한·EFTA FTA	-				-	-	79.8	80.0
	한·ASEAN FTA	14%(추정)	14%(추정)	-	-	28.7	33.1	37.7	38.7
	활용률	3.9	2.6	-	-	-			
	실용률	-	-	-	-	-	-	-	-
	한·인도 CEPA	-				16.4	35.8	36.2	42.9
	한·EU FTA	-				-	65.7	81.4	80.8
	한·페루 FTA	-				-	61.3	78.0	91.8
	한·미 FTA	-				-	-	68.9	76.1
수입	한·터키 FTA	-				-		-	70.0
	전체	-				-	-	62.7	66.9
	한·칠레 FTA	77.7	93.8	93.6	93.3	94.0	95.8	97.9	98.5
	한·싱가포르 FTA	28.2	31.4	-	-	-	56.8	-	-
	한·EFTA FTA	43.2	41.9	-	-	-	55.7	61.9	41.4
	한·ASEAN FTA	38.0	49.1	-	-	58.5	73.8	73.8	75.6
	한·인도 CEPA	-				44.7	53.6	52.7	61.0
	한·EU FTA	-				-	47.1	66.8	67.8
	한·페루 FTA	-				-	52.6	92.0	97.9
수입	한·미 FTA	-				-	-	61.0	67.3
	한·터키 FTA	-				-		-	69.0
	전체	-				-	-	67.0	69.0

주1: FTA 활용률은 '실제특혜관세혜택 수출·입/특혜관세자격 수출·입'으로, 수출 일부자료는 추정치

주2: FTA 실용률은 '특혜관세혜택 수출/대상대국 수출'으로 활용률과 다른 의미임

주3: 여러기관에서 측정한 활용률 자료 가운데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시계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8.12월

김한성,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2월

최낙균 외,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11월,

김한성 외,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12월,

오동윤 외,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11.12월,

김석오, 『FTA 원산지 검증 주요 이슈 및 활용전략』, 관세청 발표자료, '12.3월,

『한·미 FTA 100일/한·EU FTA1년간 활용성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2.6월,

『한·EU FTA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성과 및 향후계획』, 중소기업청, '12.4월,

『'13년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 관세청, '14.2월

-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용률도 증가 추세에 있음
 - 한·미 FTA의 경우 대기업 수출 활용률은 '12년 74.8% → '13년 84.1%로 상승했고, 중소·중견기업도 '12년 59.4% → '13년 69.2%로 상승¹¹⁾
 - 한·EU FTA는 대기업 수출 활용률이 '12년 85.1% → '13년 8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2년 73.5% → '13년 76.3%로 상승¹¹⁾

【기업규모별 FTA 수출 활용률(%)】

- 총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도 한·ASEAN과 한·인도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도 중소기업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기업규모별 FTA 수출 활용률('13.11월말 기준)〉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체
대기업	82.7	95.6	57.7	48.9	84.3	98.1	84.5	73.1	76.9
중소기업	70.6	67.9	29.6	35.4	76.4	56.3	69.2	66.6	57.3
전체	78.4	80.5	38.5	43.0	80.9	92.0	76.4	70.2	66.9

자료: '우리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관세청 보도자료, '13.12월

□ 정부 및 유관기관의 활용 지원은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시스템, 공급망, 검증 등 FTA 활용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조직도 민관합동, 지역, 해외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 활용 지원책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실무자, CEO, 원산지 관리자, 대학·대학원, 무역 관련 은퇴인력 등), 현장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및 기업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등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원산지 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 FTA Korea(KTNET), FTA-Pass (관세청) 등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내부 시스템(ERP)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11) '13년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14.2.25일

- 또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수출기업-협력사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급망 차원의 FTA 활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 수출 확대에 따라 검증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활용뿐만 아니라 검증 대응도 지원하고 있음
- 통합무역정보시스템(www.tradenavi.or.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FTA 활용을 위해서 수출기업과 협력사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대·중소기업 FTA 활용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¹²⁾, 원산지 관리 우수기업 지정 등을 실시
-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도 급증하고 있어 사후검증의 사전 준비나 검증 진행 단계의 자료 작성 등을 지원

〈FTA 협정별 수출 검증 요청 현황〉

FTA 상대국	'11(건)	'12(건)	'13.9월(건)
EFTA	24	10	3
ASEAN	19	31	39
EU	41	181	164
미국(추정)	-	7	84
합계	84	229	290

자료: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 구축', 관세청 보도자료, '13.10월

- 지원 조직과 관련해서 FTA활용촉진협의회가 관계부처·유관기관의 개별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돕고, 민관합동으로 개소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의 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며, 재외 공관¹³⁾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해소를 추진중
- '12.2월 민관합동으로 개소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13.6월 'FTA 콜센터 1380' 을 개통하여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

12) 협력사가 수출자에 제공하는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 요구가 많고 협력사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신력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원산지 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 및 확인하여 확인결과서를 발급하는 내용

13) FTA해외활용지원반 설치

6. 국내보완대책

□ FT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FTA 국내보완대책의 목적은 ①시장 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보전 ②해당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며 지원대상은 농축수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아우르고 있음
- 직접 피해보전책으로는 농축수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제도, 제조업·서비스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음
- 경쟁력 강화대책으로는 농축수산업을 위한 시설 현대화, 유통 개선, 종자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이 있고, 제조업·서비스업의 R&D 투자 촉진 및 수출 활성화 등이 있음

〈FTA 국내보완대책의 산업별 주요 제도〉

주요 내용		관련 제도
농축수산업	직접 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금 ¹⁴⁾ 폐업지원금 ¹⁵⁾
	경쟁력 강화대책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문 보완 핵심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산지 거점유통센터 배치 농식품 안전성 제고, 종자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농업 구조개선, 소득안정화 등
		농업 구조개선, 소득안정화 등
제조업·서비스업	직접 피해보전	무역조정지원제도 ¹⁶⁾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경쟁력 강화대책	R&D 투자촉진, 수출활성화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 취합

- 14)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분을 직불금 형태로 보전 받는 것. 직불금=생산면적(마리)X(발효전 5년 동안 최고, 최저치 제외한 3년 평균가격 수입* - 당해년도 가격 수입)X90%
- 15) FTA 이후 수입증가로 사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수 없고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 폐업의 경우 폐업지원금=폐업면적×연간단위면적당 순수입액×3년, 양도의 경우 폐업지원금=양도면적×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입액×1년
- 16)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로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5~10%로 감소한 경우 융자 자금지원(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금리('13.4분기 3.27%) 적용, 시설자금: 8년 이내 기업당 연간 45억원 한도, 운전자금 5년 이내 기업당 5억원 한도) 또는 컨설팅 자금(소요비용의 80%, 기업당 4천만원 한도)을 지원받게 됨

□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칠레 FTA를 계기로 마련되어 한·EU FTA와 한·미 FTA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됨

- 현 FTA 국내보완대책의 체계는 한·미 FTA를 계기로 '07.11월 수립되었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준·발효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되고 내용이 보완되었음
- 한·칠레 FTA 당시('04년)의 국내보완대책은 1.2조원 규모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보전이 주된 내용
- 한·EU FTA에 대비('10.11월)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을 추가 투입(추가 2조원+기존 8.8조원=총 10.8조원)하고, 제조업 가운데 피해가 우려되는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
- 한·미 FTA 대비하여 종합적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고('07.11월) 이를 두 차례 보완하여 총 24.1조원 규모('12.1월)의 재정지원책을 마련했으며, 면세유·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의 일몰 연장 및 농사용 전기료 대상 확대 등 29.8조원의 세제지원책을 마련

〈FTA 국내보완대책별 추진 방향〉

FTA	일시	규모	중점 추진 방향
한·칠레 FTA	'04년	1.2조원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직접 피해보전 ·'04~'10년간 1.2조원, '09년 이후 한미 대책에 통합
한·EU FTA	한·EU FTA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	2조원 (10.8조원)	·기존 축산분야 투융자(8.8조원)에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위해 2조원 추가해 '11~'20년 10.8조원
		제조업	·화장품·의료기기 산업경쟁력 제고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
한·미 FTA	FTA 국내보완대책('07.11)	21.1조원	·21.1조원→22.1조원→24.1조원으로 확대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11.8)	22.1조원	·'08~'17년 총 24.1조원 규모의 투융자 ·24.1조원=품목별 경쟁력 강화 22.5조원 +직접적 피해보전 1.6조원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12.1)	24.1조원	·재정지원(24.1조원) 외에 세제지원(면세유, 농사용 전기료 등) 29.8조원을 합치면 총 54조원 규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 취합

□ 국내보완대책은 직접적 피해 지원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농축수산업의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은 한·칠레 FTA 당시 키위, 시설 포도에서 한·미 FTA 이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발동기준도 한·칠레의 경우 기준가격의 80%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였으나 85% 이하('10.11월) → 90% 이하('12.1월)로 완화됨

- 발동기준 완화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사례가 나타남(참고 참조)

○ 보전비율 역시 기준가격과 수입 증가로 하락된 가격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것에서 85%('07.11월) → 90%('10.11월)로 확대되었고, 한·중 FTA를 앞두고는 이 보전 비율을 90% → 10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있음

○ 제조업, 서비스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역시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했으나 한·미 FTA 타결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동 요건 역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비 25% 이상 감소('07.11월)에서 20% 이상 감소('11.9월) → 5~10%('12.1월)로 대폭 완화되어 수혜대상을 확대

- 발동기준이 완화된 '12년 이후 피해판정 기업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

<직접 피해보전의 발동 요건 완화 및 대상·보전비율 확대 추이>

		'04.4월	'07.11월	'10.11월	'11년	'12.1월
농축수산업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대상	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모든 품목)			
	발동기준	80%	80%	85%	(7월)85%	90%
	보전비율	80%	85%	90%	90%	90%
제조서비스업 무역조정 지원제도	지원대상	제조업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피해기준	-	25%	25%	(9월)20%	(컨설팅)5% (용자)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 취합

【참고 : 국내보완대책의 직접 피해 보전 사례 및 현황¹⁷⁾】

✓ (피해보전직불제 사례) 한우,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13.4월)

- 완화된 발동기준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짐
- 수입량 기준, 직불금 발동기준을 모두 충족한 첫 사례
- 한우 두당 13,545원, 한우송아지 두당 57,343원 지원(도축일 기준), 총 248억 원 지급

✓ (무역조정지원제도 사례) A돈육업체, 지원 기준 완화 후 첫 피해 인정('12.8월)

-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기준이 크게 완화된(20%→건설팅5%, 용자10%) 이후 첫 지정 사례
- 해당 업체는 한·EU FTA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운전자금 2억원을 용자 지원 받음

· (무역조정지원제도 판정 현황) '13년까지 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 건수는 총 52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에 대해 피해판정이 이루어졌고 12건은 피해없음 판정(1건은 조사중)

-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기준이 크게 완화된(20%→건설팅5%, 용자10%) '12년 이후 기업의 신청 및 피해판정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남
- '08~'11년: 신청 8건/피해판정 7건 → '12~'13년: 신청 44건/피해판정 32건

· (품목별 피해판정 현황) 총 39건의 피해판정 가운데 돈육가공품(16건)이 가장 많았고 핸드백·지갑(2), 골프웨어(2), 머루주(1), 시계(1), 염장고등어(1), 복분자주(1), 도료경화제(1), 티셔츠(1), 탈모방지샴푸(1), 초콜릿(1), 방직기계부품(1), 와인(1), 등산화(1), 스포츠용 신발(1), 에틸렌글리콜(1), 페인트(1), 염모제(1), 드레스화(1), 기초용화장품(1), 스프링(1), 여성의류(1) 등이 있음

- 돈육가공품은 '12년에 많은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 (협정별 신청 현황) 총 52건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신청 건수 가운데 한·EU FTA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ASEAN FTA(12건), 한·칠레 FTA(4건), 한·EFTA FTA(4건), 한·미 FTA(1건), 한·싱가포르 FT(1건) 등의 순임

· (지원 현황) 총 30개 기업에 총 96.55억원 지원(용자: 94.49억원, 상담 2.06억원)

〈무역조정 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단위: 개사, 억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누계
신청 (조사중)	3	3	2	-	13	31 (1)	52 (1)
피해판정	2	3	2	-	8	24	39
피해없음 (철회)	1				5 (3)	6 (2)	12
지원 실적 (억원)							
용자	5.5	6.0	22.37		25.12	35.5	94.49
건설팅	0.32	0.16	0.16		0.78	0.64	2.06
총계(30개기업)	5.82	6.16	22.53		25.90	36.14	96.55

주: '13.12.20일 기준

자료: '스프링, 여성의류 등 2개 기업에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산업부 보도자료, '13.12월

17) '스프링, 여성의류 등 2개 기업에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3.12.21월 및 언론보도자료 종합

II.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단기간에 양적·질적 확대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 제도화, 체계화, 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음
- (전개과정) FTA 추진을 결정하고 한·칠레 FTA 발효(FTA 1.0) , FTA 추진 로드맵 작성 통해 한·EU 및 한·미 FTA 발효(FTA 2.0), 新통상로드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FTA 3.0) 의 과정을 거침
- (양적·질적 확대) '04.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9건 46개국¹⁸⁾으로 확대되었고, 미국, EU, ASEAN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한 것은 한국이 유일
- (추진 전략) 과거 FTA 추진 로드맵¹⁹⁾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미국,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 수준 높은 FTA를 목표로 하고, 약 10년 뒤인 '13.6월의 新통상 로드맵은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코자 한미, 한중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
- (추진 절차) FTA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추진절차의 체계화·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4.6월 FTA 체결절차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1.12월 국회를 통과한 통상절차법²⁰⁾은 의견 수렴 절차 및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
- (의사소통) FTA 추진 과정에서 민간자문회의, 국내대책위원회, 산업계가 주도한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왔고, '13.5월 발족한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
- (활용) 업계의 노력,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FTA 활용률 지속 개선('13년 수출 66.9%, 수입 69.0%)

18) '13.7월 EU 확대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할 경우 47개국

19) '04.5월 수정 및 보완

20) '12.7월 시행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보완대책) 취약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었고,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며 실효성이 제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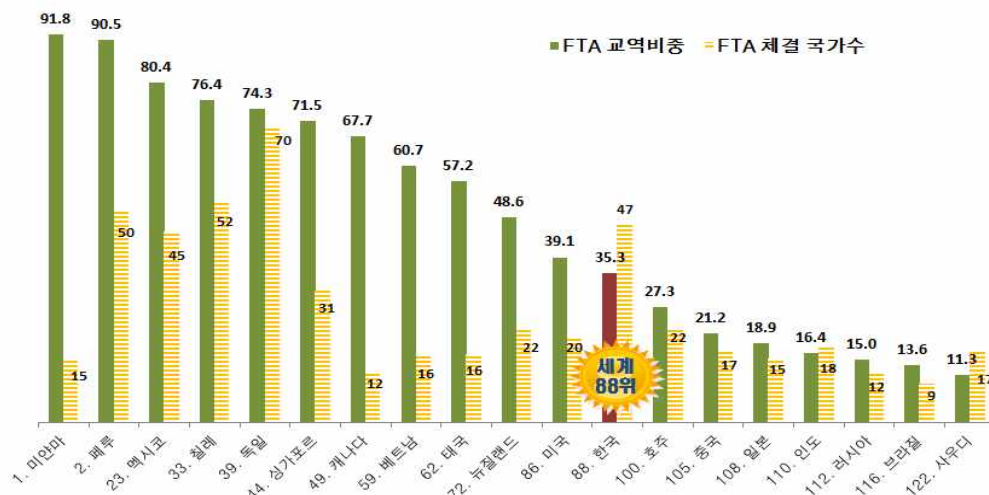
〈한국 FTA 10년의 발자취〉



2. 향후 과제

- 지난 10여 년간의 공세적인 FTA 추진으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교역환경을 구축했지만, 세계 수준에는 여전히 뒤쳐지고 있음
 - 자유로운 교역환경의 수준을 가늠하는 FTA 교역비중²¹⁾은 '13년말 현재 35.3%로 중국(21.2%), 일본(18.9%) 등을 큰 폭으로 앞지르고 있어, 우리의 경쟁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역 환경을 조성
 - 하지만 FTA 교역비중의 세계 순위는 88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FTA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미얀마의 경우 ASEAN 회원국으로서 ASEAN 등 주변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아 FTA 교역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제조업 강국인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 NAFTA 회원국인 멕시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등의 FTA 교역 비중도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FTA 교역비중 및 체결국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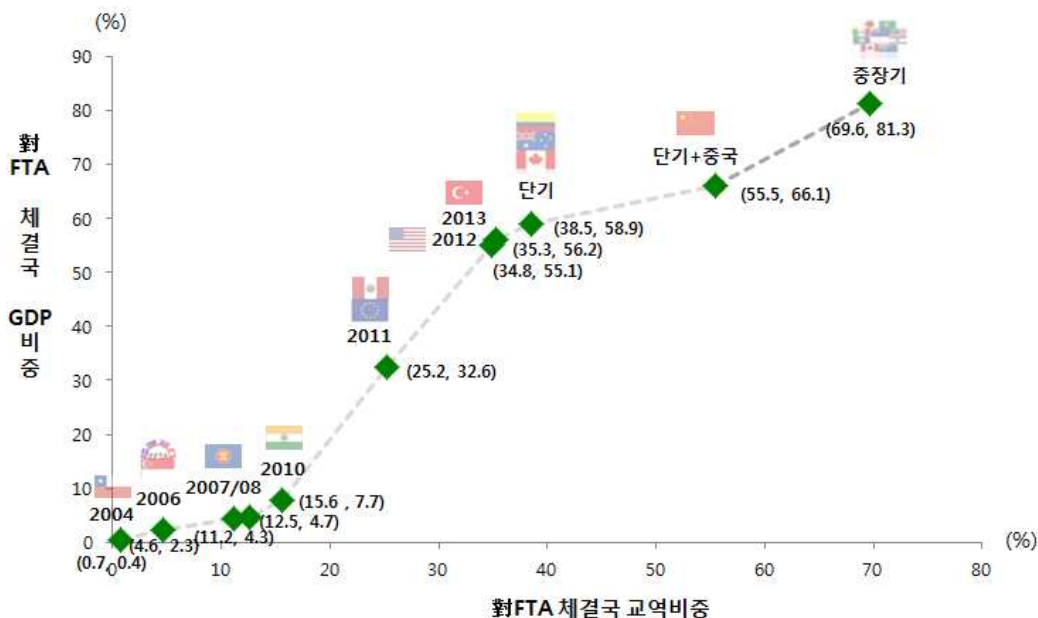
주: 교역비중은 2012년 기준, 체결 국가수는 2014년 3월 기준
 자료: IMF DOTS, WTO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21)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 FTA 확대와 함께 개척 가능한 시장의 크기 및 교역환경의 자유도는 우상향하며 지속해서 개선되어 왔음

- FTA 발효국의 세계 GDP 비중은 보다 자유롭게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며, '13년말 우리나라 FTA 발효국의 세계 GDP 비중은 56.2%로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의 관문이 낮아짐
-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의 상승은 우호적인 교역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FTA 교역비중이 '13년말 35.3%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전체 교역에서 1/3은 보다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됨
- '13년말 한국의 FTA 교역비중은 35.3%, 세계 GDP 비중은 56.2%이며 캐나다·호주·콜롬비아와의 FTA 발효시 각각 38.5%, 58.9%까지 확대되고, 중국과의 FTA 발효시에는 각각 55.5%, 66.1%, 중장기적으로 현재 협상중인 FTA가 모두 발효되면 69.6%, 81.3%까지 확대

〈한국 FTA 추진의 경제적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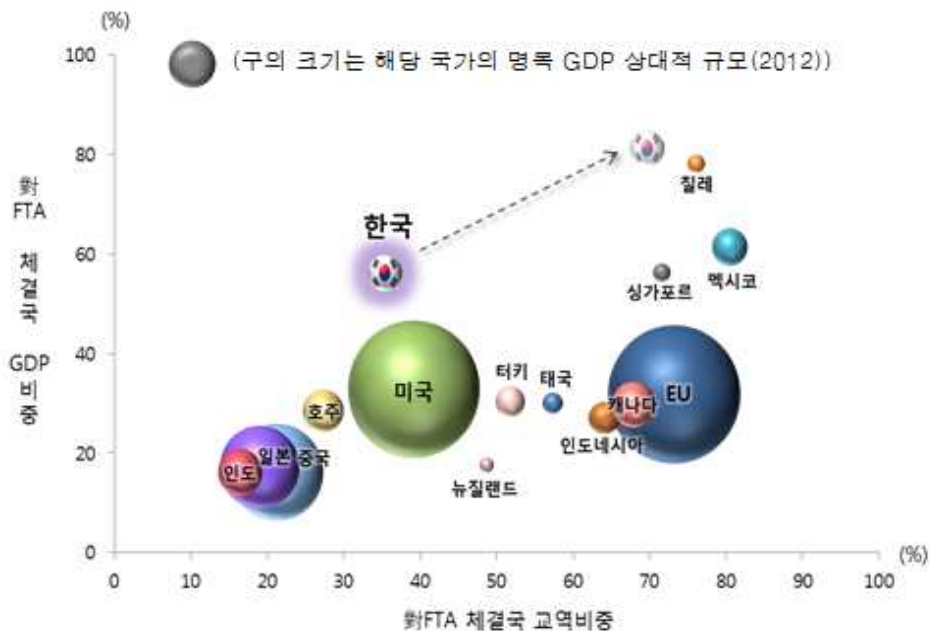
주: GDP 및 교역비중은 2012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내수시장이 작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유리한 교역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방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필요

-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의 개척 가능성(FTA 발효국의 세계 GDP 비중)과 교역의 자유로움(FTA 교역 비중)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음
- 특히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는 작지만 세계 시장의 개척 가능성과 교역의 자유로움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음
- 세계적으로 FTA 추진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가 개방적 통상정책을 지속하여 현재 협상중인 FTA를 모두 마무리할 경우 자유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과 우호적인 교역 환경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설 수 있음
- 일본도 한국 등에 뒤쳐진 FTA 추진을 극복하고자 '18년까지 FTA 교역 비중 70% 확대 목표(現 18.9%)를 세우는 등 경쟁이 갈수록 치열

<한국 FTA의 향후 방향>



주: GDP 및 교역비중은 2012년 기준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KITA.net), WTO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참고자료〉

- 기재부, ‘한·미 FTA 100일/한·EU FTA1년간 활용성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2.6월
- 기재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FTA 국내보완대책’, 기획재정부 홍보자료, ‘12.1월
- 김도훈,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08.10월
- 김석오, 「FTA 원산지 검증 주요 이슈 및 활용전략」, 관세청 발표자료, ‘12.3월
-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8.12월
- 김한성,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9 No.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2월
- 김한성 외,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9-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12월
- 관세청,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 구축’, 관세청 보도자료, ‘13.10.24일
- 관세청, ‘우리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관세청 보도자료, ‘13.12월
- 관세청, ‘13년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14.2월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08년
- 산업부, ‘무역위원회, 돈육업체에 FTA 무역피해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2.8월
- 산업부,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3.6.14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산업부, ‘스프링, 여성의류 등 2개 기업에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3.12.21일
- 산업부,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늘고, 다양한 성공사례 도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3.12.27일
- 이경희, ‘역사로 보는 FTA-①FTA의 탄생’, 함께하는 FTA Vol.20, ‘14.1월
- 이혜연 외,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 트레이드 포커스 Vol.13 No.1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3월
- 오동윤 외,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11.12월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확대 실시’, 함께하는 FTA Vol.22, ‘14.3월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대통령 훈령 제 288호, 법제처, ‘11.7.6일 시행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대통령 훈령 제121호, 법제처, ‘04.6.8일 시행
 중기청, ‘한-EU FTA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성과 및 향후계획’, 중소기업청, ‘12.4월
 조성대, 「FTA 추진과정에서 행정부, 국회, 산업계 의견수렴제도평가」,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08.10월
 제민,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사업평가현안분석 제28호, 국회예산정책처, ‘10.10월
 최낙균 외,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09-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11월
 최원목, 「한국 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통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토론회 자료, 국회 부의장 박병석, 국회입법조사처, ‘12.8월
 최세균,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정책 연구 보고 P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7.5월
 최세균, 「FTA 협상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농업부문」,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08.10월
 최민지, ‘농업분야 FTA국내보완대책과 현황’, 함께하는 FTA Vol.22, ‘14.3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훈령 제121호, 대통령령 제24424호, 법제처, ‘13.3.23일 시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17호, 법제처, ‘13.3.23일 시행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12.1월
 奥田 聡, 『韓国の10年の歩み第三国への影響』, アジ研選書19, IDE-JETRO, ‘10년

관세청(www.customs.go.kr)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

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support.krei.re.kr)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무역위원회(www.ktc.go.kr)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사업(www.taa.go.kr)

통합무역정보시스템(www.tradenavi.or.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FTA강국코리아(fta.go.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